

새해 달라지는 것들

만 5세 보육료 月 20만원 지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건설·부동산·교통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내년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광고차 청약제한 = 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 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 = 가설건축물은 원래 건축허가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한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과 체계 전면 개편 =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출산 지원금 50만원... 75세 이상 틀니비용 50% 경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서울~진주 KTX 연결

▲신규 도로 개통 등 교통 편의 증진 =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4월에 개통되고,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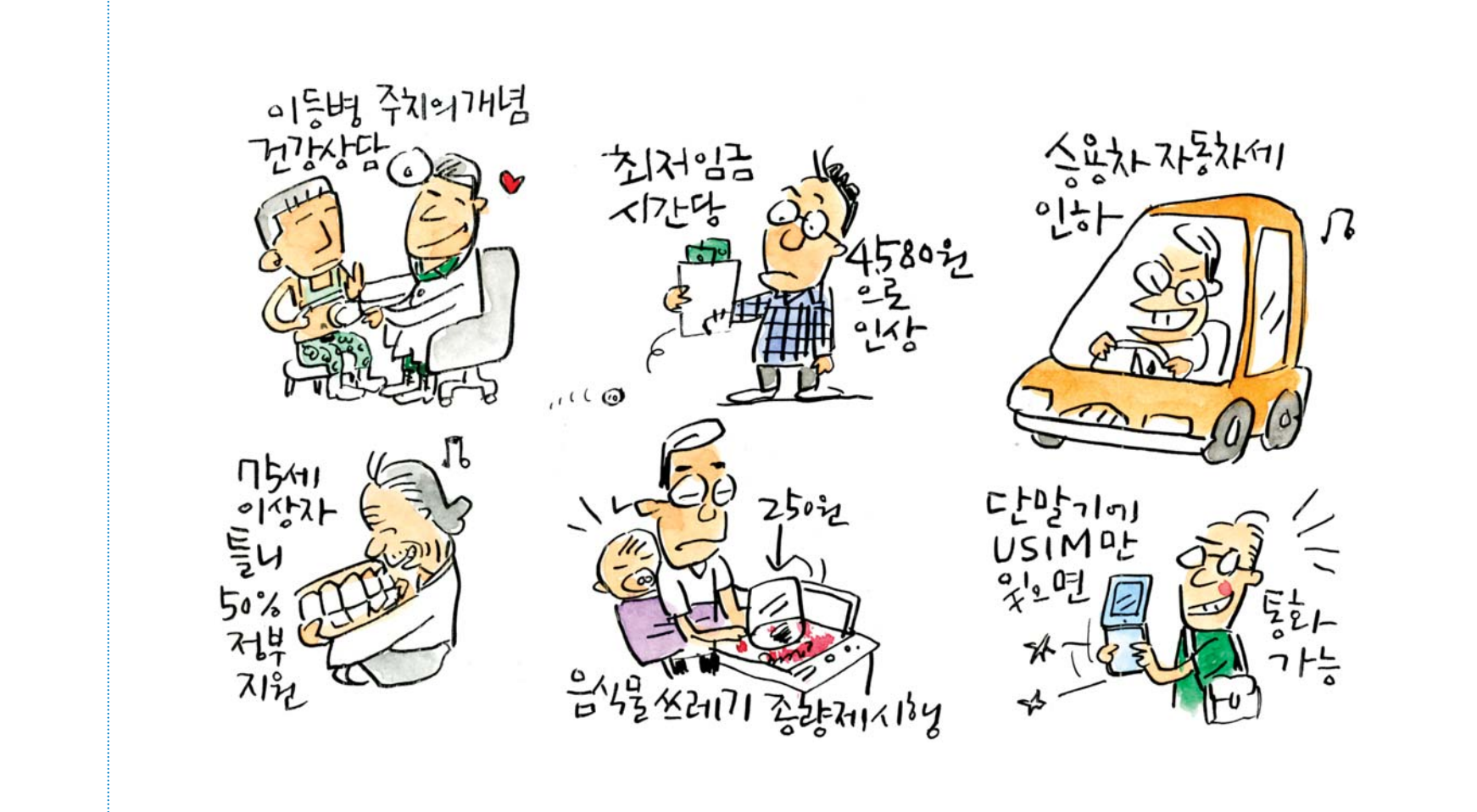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 제도 실시 =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서면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차,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상호 출자제하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내부거래 관련 공시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이 공시 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확대된다.

농식품·산림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백신을 인건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5일부터 시행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민물장

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국민총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노인·임신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 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새해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교육

▲5세 누리과정 도입 =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 = 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연말까지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영화관·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 = 영화관과 환원·전시장·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자전거 온실가스·연비 규제 =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판매하는 제작사나 수입사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 = 야생 동·식물을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약품 7500여개 품목 가격 평균 14% 인하

시급 최저 4580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범무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제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초과제도 개선 =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kg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초과하지 않는다.

행정

▲이동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 유사시 활용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 =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진출 지원 = 9급 공무원 신규 공채시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포함된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재산세를 5년간 3~15% 감면한다.

세 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6월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원씩 내린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초과제도 개선 =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kg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초과하지 않는다.

광주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전통시장 카드공제 확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 = 입주계약자 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가 무이자 2년간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인상 = 1개월 143만 9413원이던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내년부터는 3.9% 인상된 149만550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자동차용 유모차 지원 = 내년부터 기초수급가구 18세 미만 뇌병변·지체장애장애인(1~2급)에게 1가구 1대(25만원)의 유모차가 지원된다.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들의 출산시 각각 50만원, 30만원씩 지원되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20%이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등록 반환 발급 수수료 인하 = 차종별 발급 수수료가 20% 인하된다. 1만2100원이던 대형 발급수수료가 9600원으로 낮아지고, 1만1000원이던 중형 수수료는 8800원으로 인하된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 = 초등 전학년에 제공되던 무상급식이 내년에는 초·중·고교 전제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 = 현행 학생부담 이자 중 1%~2.5%포인트 이지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학생 부담이자 전체 4.9%포인트 모두 지원된다.

전남도

초·중 친환경 무상급식 농자금 대출 연리 1%로

▲무상급식 확대 = 도내 도시 등 지역의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한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분 전액 지원. 지원대상은 연가소득 2490만원 이상 3571만원 이하인 '저리 1종' 대상과 3572만원 이상 4839만원 이하 '저리 2종'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가정이다.

▲농업자금 이자율 인하 =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 이자율을 연리 1%로 낮춘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ha당 유기농산물은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저농약 단지와 무제초제 농법을 실천하는 논에 대해서는 새끼우렁이를 공급(ha당 12만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범위 도내 전 지역 확대. 시범품목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복숭아 등 5개 품목을 추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 가족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시장·군수에게 고용신고서를 하고, 가족전염병 예방교육과 소득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제역 예방약품 자부담 = 일정 규모 이상(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부담해야 한다.